

문서번호	여성정책담당관-440	★담당자	여성정책담당관	가족보건기획관	여성가족정책관
보존기간	3년				
결재일자	2009.01.09.				
공개여부	공개				
방침번호		협 조	능력개발팀장		



「여성인력개발센터」 확충 및 지정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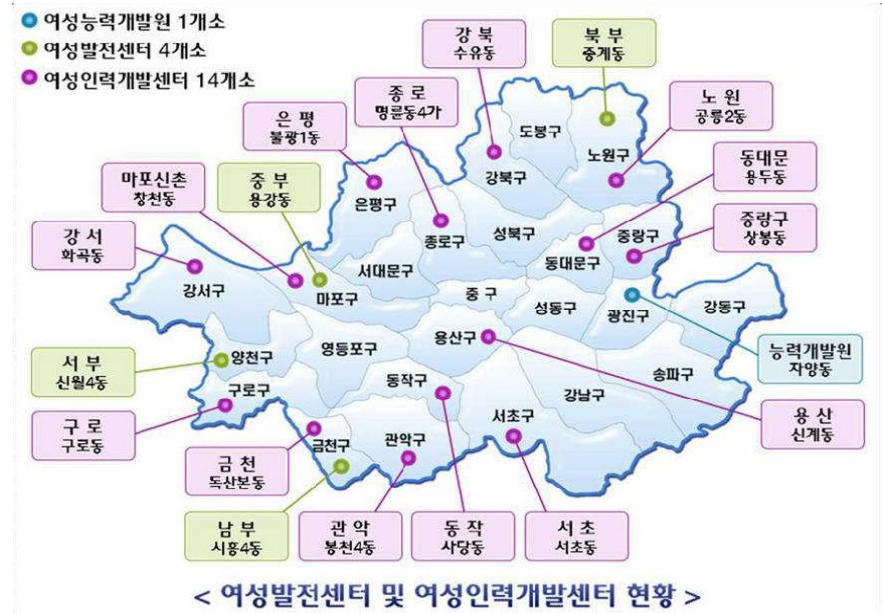
여성가족정책관
(여성정책담당관)

여성인력개발센터 확충 및 지정계획

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인력개발기관 미설치 지역 및 수요가 요구되는 서울 동남권 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확충하고자 함.

1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

- 설치기관 : 총 19개 기관
 - 여성능력개발원 및 4개 여성발전센터 : 민간위탁
 -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: 지정제
- ※ 현재 미설치 구(9) : 중구, 서대문, 성북, 성동, 영등포, 도봉, 송파, 강동, 강남
(2개 설치 구 : 노원, 금천)



○ 예산지원(연간)

-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 : 운영비 및 시설비 50~60% 지원(약 8억)
- 여성인력개발센터 : 임차료 보조, 운영비의 약 20% 지원(약 1.2억), 기타 사업비 지원

○ 사업내용 : 취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→ 취업상담 및 연계 → 사후관리

○ 여성인력개발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

구분	근거법령	운영방법	운영기간
여성발전센터	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· 위탁	3년
여성인력개발센터	여성발전기본법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· 지정	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

2 여성인력개발기관 확충계획

■ 여성인력개발기관 확충 계획

- 2012년까지 각 자치구에 1개씩 여성인력개발기관 배치목표로 추진하되,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, 설치가 용이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
 -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직업교육 수혜자 범위 확대
 - ▶ 19개소('09년) → 20개소('09년) → 25개소('12년)로 점진적 확대
- '09년도에 임차료 지원예산(15억)이 확보된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는 동남권지역에 설치
 - 동남권 지역(강동, 송파, 강남)은 현재 미설치 지역 중 교육 및 취업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됨
 - 또한 동남권지역의 평균 여성비율도 50.7%(시 전체 50.3%) 차지
 - ※ 2008.12월 강동지역에 여성발전센터건립 요청이 시의회(이지철 의원)에서 건의되어 '09년 강동여성발전센터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 예정(용역비 50백만원)

3 운영주체 선정 및 지정계획

가.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대상지역 : 동남권지역(강동, 강남)

※ 강동구 지역은 현재 여성발전센터건립을 검토 중에 있어 제외

나. 운영자 선정방법

- 여성의 사회참여 또는 여성직업교육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**역량있는 운영주체를 공개모집하여**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

공모 및 지정계획(안)

- 선정방식 :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 및 접수 후 심사
- 신청자격 : 여성단체(비영리 시민단체) 등
- 지정기준
 -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(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34조의 3)
 - 운영주체의 경영자립도 및 사업계획서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
 - 여성능력개발사업 또는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실적 등을 고려
- 지정기간 : 지정일(2009.4월 예정)부터 ~ 지정취소 전까지

다. 운영주체 선정시 고려사항

- 교육 기자재 등 시설·장비투자 계획
 - 시설 및 장비투자는 법인 자체부담을 원칙(법인의 지원계획서 첨부)으로 하되, 지정 이후 시설 장비설치기준 부합여부를 시에서 확인 후, 미이행시는 지정 취소도 고려
- 교육훈련 운영계획
 - 동남권의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제출

라. 임차보증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

- 임차료는 15억원까지 지원가능
 - 운영법인을 계약자로 한 전세계약 원칙
 - 임차료를 제외한 시설비 및 기타경비(중개수수료 등)는 법인 자체부담
- 건물, 토지에 대한 근거당권(저당권자 : 서울특별시)을 설정하되, 추후 문제발생시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1순위로 설정 추진

마. 향후 추진일정

-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계획 수립 '09. 1. 12
- 공고문 작성 및 지정심사기준(안) 마련
- 운영주체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'09. 1. 14 ~ 1.28
- 일간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(10일간)
-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'09. 1. 20
- 심사 및 운영주체 선정 '09. 2. 5
- 사업계획 및 법인의 센터 운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
- 건물 임대차 계약 등 센터운영 준비 '09. 2. 6~3.31
- 지정 법인에 임대료(15억원) 교부
- 시설공사 및 장비설치, 직원채용
- 지정서 교부 및 센터운영 개시 '09. 4. 1
※ 센터 운영 개시일은 센터운영 준비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
별첨 **참 고 자 료**

- 관련근거 : 여성발전기본법 제 33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3
 - ▶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 관련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(이하 "여성인력개발센터"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·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※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(제34조의3제1항 관련)

1. 인력 기준: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인력은 총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
구 분	지 정 기 준
관 장	○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○ 사업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자
교육·훈련 담당자	○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○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취업 관련 상담자	○ 「직업안정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는 자

2. 시설 기준

구 분	지 정 기 준
면 적	○ 시설의 연면적 825제곱미터 이상
인력개발시설	○ 강의실 및 실습실: 여성인력개발 교육·훈련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 보유
취업알선 및 상담시설	○ 구인·구직상담에 응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○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·구직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○ 구인·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○ 그 밖에 취업알선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
그 밖의 문화활동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관련시설	○ 회의실 또는 강당: 교육 및 과정수료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○ 사무실 : 일반사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필요 비품 보유 ○ 유아놀이방: 시설 이용 여성을 위한 유아보호시설